

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6월 3일 임헌경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도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라 도서관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고,
- 소규모의 공간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 ~ 제2조)
- 작은도서관의 기능(안 제3조)
- 도지사의 책무(안 제4조)
-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예산의 지원(안 제6조)

4. 검토의견

금번 제정 조례안은 도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라 도서관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고, 소규모의 공간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.

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3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수행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음.

동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 1부. 끝.